

農藥管理法(改正)

制定 1957. 8. 28 法律第 445號

改正 1969. 5. 22 法律第2115號

1977. 12. 31 法律第3064號

(全面改正)

1979. 12. 28 法律第3213號

1980. 12. 31 法律第3322號

(全面改正)

第 1 條 (目的) 이 법은 農藥의 品質向上, 流通의 圓滑 및 그의 適正한 使用을 圖謀하기 위하여 그 製造·輸入·販賣 및 使用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農業生産의 安定과 生活環境保全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定義) 이 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農藥”이라 함은 農作物(樹木 및 農·林産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害하는 菌·昆蟲·응애·線蟲·바이러스·其他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動·植物(이하 “病害虫”이라 한다)의 防除에 使用하는 殺菌劑·殺虫劑·除草劑와 農作物의 生理機能을 增進 또는 抑制하는데 使用되는 生長調整劑 및 藥効를 增進시키는 資材를 말한다.

2. “農藥名”이라 함은 主된 適用 病害蟲·適用地目 또는 用途에 따라 命名한 것을 말하고 品目 이라 함은 有効成分量 및 製劑 形態가 同一한 農藥의 種類를 말하며, “原劑”라 함은 農藥의 有効成分이 濃縮되어 있는 農藥 製造用의 主資材를 말한다.

3. “製造業”이라 함은 農藥을 製造(加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여 이를 販賣하는 것을 業으로 함을 말하고 “輸入業”이라 함은 農藥 또는 原劑를 輸入하여 이를 販賣하는 것을 業으로 함을 말하며 “原劑業”이라 함은 原劑를 合成·製造하여 製造業者에게 販賣하거나 自體農藥製造에 使用하는 것을 業으로 함을 말한다.

4. “製造業者”라 함은 製造業을 營爲하는 者, “輸入業者”라 함은 輸入業을 營爲하는 者, “原劑業者”라 함은 原劑業을 營爲하는 者, “販賣業者”라 함은 製造業者 및 輸入業者 이외의 者로서 農藥의 販賣를 業으로 하

는者, “防除業者”라 함은 農藥을 使用하여 病害蟲을 防除하거나 農作物의 生理機能을 增進 또는 抑制시키는 것을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第3條 (農藥의 需給調節등) ① 農水産部長官은 農藥의 需給圓滑과 價格安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製造業者·輸入業者·原劑業者 및 販賣業者에 대하여 需給의 調節과 流通秩序의 維持를 命할 수 있으며 農業協同組合中央會(이하 “農協中央會”라 한다)에 대하여 農藥을 備蓄·供給하게 할 수 있다.

② 農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協中央會가 農藥을 備蓄·供給하는 경우에는 그 需給 및 價格에 관한 管理指針을 정할 수 있다.

第4條 (農藥計定設置 및 財政支援)

① 農協中央會는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藥을 備蓄·供給할 경우에는 따로 農藥計定을 設置·運營하여야 한다.

② 農協中央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藥計定の 設置·運營에 관한 規定을 정하여 農水産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를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藥計定の 圓滑한 運營을 위하여 豫算의 範圍안에서 補助金을 支給하거나 財政資金을 融資할 수 있

다.

第5條 (農藥의 品目告示등) ① 農藥의 品目は 農水産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農水産部長官이 이를 告示한다.

② 農水産部長官이 告示하지 아니한 品目の 農藥은 이를 製造 또는 輸入하거나 販賣할 수 없다. 다만 試驗用 또는 學術研究用 品目の 農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藥의 品目別 告示項目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農藥名·品目名
2. 有効成分의 種類 및 含有量
3. 副材名 명칭 또는 용도 및 그 含有量의 基準
4. 適用病害蟲의 範圍(除草劑·生長調整劑 및 藥效를 增進시키는 資材에 있어서는 適用地目 또는 用途) 및 使用量
5. 藥效保證期間
6. 其他 農水産部長官이 필요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④ 第3項 各號의 事項을 告示하고자 할 때에는 農藥管理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審議·議決을 거쳐야 한다.

⑤ 農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한 品目(이하 “고시품목”이라 한다)을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一定한 猶豫期間을 둔 후 할 수 있다.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

는 農水産部에 두되, 그 組織과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 6 條 (品目告示를 위한 試驗) ①

第 5 條의 規定에 의한 農藥의 品目告示는 當該農藥에 대하여 農村振興廳長이 그 藥效·藥害·毒性 및 殘留性에 關한 試驗을 實施한 후 行한다.

②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試驗은 農村振興廳長이 職權으로 또는 關係機關·製造業者·輸入業者의 申請에 의하여 行한다.

③ 農村振興廳長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試驗을 다른 專門機關에 依頼하거나 그 試驗의 一部를 省略할 수 있다.

④ 第 2 項 및 第 3 項의 規定에 의한 試驗에 所要되는 費用은 當該告示品目を 製造하거나 輸入하는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가 이를 負擔한다.

⑤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試驗의 基準과 方法은 委員會의 審議·議決을 거쳐 農村振興廳長이 定한다.

第 7 條 (製造業 또는 輸入業의 許可)

① 第 5 條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告示品目を 製造 또는 輸入하여 이를 販賣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農水産部長官의 製造業 또는 輸入業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製造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輸入業의 許

可를 받지 아니하고 輸入業을 할 수 있다.

②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農水産部令이 定하는 基準에 適合한 要件 및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③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가 그 營業을 讓渡 또는 賃貸하거나 그 施設중 農水産部令이 定하는 施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農水産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④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가 그 營業을 廢業 또는 休業하거나 休業한 營業을 再開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20日內에 이를 農水産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 8 條 (品目の 登錄) ①

製造業 또는 輸入業의 許可를 받은 者가 第 5 條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告示品目を 製造 또는 輸入하여 販賣하고자 할 때에는 農水産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品目別로 農水産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②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가 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品目の 製造 또는 輸入을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그 廢止豫定日 20日前까지 農水産部長官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③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가 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品目の 製造 또는 輸入을 休止하고자 할 때에는 最終의 製造日 또는 輸入日(品目登錄을 하고 製造 또

는 輸入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登錄日)로부터 1年內에 農水産部長官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休止한 品目の 製造 또는 輸入을 再開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20日內에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第9條 (原劑業의 登錄) ① 原劑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適合한 要件 및 施設을 갖추어 그 合成製造 하고자하는 原劑의 種類와 함께 農水産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原劑의 種類를 追加하여 合成製造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② 原劑業者가 그 原劑의 合成製造를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그 廢止豫定日 20日前까지 農水産部長官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③ 原劑業者가 그 原劑의 合成製造를 休止하고자 할 때에는 最終의 合成製造日 (合成製造登錄을 하고, 合成製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登錄日)로부터 1年內에 農水産部長官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休止한 原劑의 合成製造를 再開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20日內에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第10條 (販賣業의 登錄) ① 販賣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適合한 要件 및 施設을 갖추어 그 販賣業所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道知

事라 한다)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② 販賣業者가 그 營業을 廢業 또는 休業하거나 休業한 營業을 再開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20日內에 그 販賣業所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11條 (防除業의 登錄) ① 防除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適合한 要件 및 施設을 갖추어 그 營業所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道知事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輸出入植物(植物防疫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植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除防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國立植物檢疫所長(이하 “植物檢疫所長”이라 한다)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② 防除業者가 그 營業을 廢業 또는 休業하거나 休業한 營業을 再開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20日內에 業種別로 그 營業所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道知事 또는 植物檢疫所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12條 (製造業 또는 輸入業의 許可取消) 農水産部長官은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할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7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業을 하는 製造業者가 그 輸入業에 관하여 第1號 및 第3號내지 第5號의 1에 該當하는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製造業의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第5條第2項 本文 또는 第8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告示되지 아니한 品目이나 登錄을 하지 아니한 品目を 製造 또는 輸入하여 이를 販賣한 때

2. 第7條第3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營業을 讓渡 또는 賃貸하거나 施設을 變更한 때

3. 第7條第4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1년이 상 休業한 때

4.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品目の 登錄取消의 回數 또는 登錄된 品目の 數에 대한 登錄取消回數의 比率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回數 또는 比率을 超過한 때

5.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命令에 違反한 때

6. 第2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補完命令에 違反한 때

第13條 (營業의 停止, 登錄의 取消 등) ① 農水産部長官·道知事 또는 植物檢疫所長은 製造業者·輸入業者·原劑業者·販賣業者 또는 防除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할 때에는 필요한 警告를 發하거나, 2年の 範圍 안에서 期間을 정하여 營業의 全部 또는 一部의 停止를 命하거나 登錄(製造業者 및 輸入業者에 있어서는 品目の 登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取消할 수 있다.

1. 第3條第1項의 命令에 違反한

때

2. 第8條第1項·第9條第1項·第10條第1項 및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가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1년이 상 當該農藥이나 原劑를 製造 또는 輸入하여 販賣하지 아니하거나 休止 또는 休業한 때

3.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農藥의 表示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偽의 表示를 한 때

4. 第16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農藥을 陳列 또는 販賣한 때

5. 第17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虛偽廣告 또는 誇大廣告를 하거나 同條의 規定에 의한 廣告方法에 따르지 아니하고 廣告를 한 때

6.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農藥을 使用하거나 取扱한 때

7.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한 農藥의 品質이 不良하다고 判明되거나 虛偽의 自體檢査成績書를 提出한 때

8. 第1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나 試料의 收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때

9. 第2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偽의 報告를 한 때 또는 同條 同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補完命令에 違反한 때

10.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農藥管理臺帳 등 帳簿에 虛偽의

事項을 記載하거나 그 帳簿을 保存하지 아니할 때

11. 保健衛生 또는 環境保全에 重大한 危害를 發生하게 한 때

農水産部長官·道知事 또는 植物檢疫所長은 製造業者·輸入業者·原劑業者·販賣業者 또는 防除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命令에 違反한 때에 는 그 登錄을 取消한다.

第14條 (許可 또는 登錄의 制限) 第12條 및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登錄이 取消된 者는 그 取消된 날로부터 3年間 그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할 수 없다.

第15條 (農藥의 表示)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는 그 製造 또는 輸入한 農藥을 販賣하고자 할 때에는 容器나 包裝에 農藥名·品目名·有効成分別含有量·適用病害蟲名 藥効保證期間 其他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事項을 表示하여야 한다.

第16條 (陳列·販賣의 禁止) 製造業者·輸入業者 또는 販賣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農藥을 陳列하거나 販賣하여서는 아니된다.

1.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表示를 하지 아니한 農藥
2. 改包裝 또는 分包裝을 한 農藥 다만, 輸入業者(第7條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業을 하는 製造業者를 포함한다)가 輸入하여 改包裝 또는 分包

裝을 한 農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自體檢査畢證이 添附되지 아니한 農藥

4. 農藥의 容器나 包裝의 表記事項이 毀損되어 識別이 困難한 農藥

5. 藥効保證期間이 經過된 農藥

第17條 (虛偽廣告등의 禁止) ① 製造業者·輸入業者 또는 販賣業者는 그 製造·輸入 또는 販賣하는 農藥에 대하여 虛偽廣告나 誇大廣告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農藥의 廣告에 관한 方法과 誇大廣告의 範圍는 農水産部令으로 정한다.

第18條 (農藥의 安全使用基準 등)

① 農藥을 安全하고 適正하게 使用·取扱하도록 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그 安全使用基準과 毒性的의 區分에 따른 取扱制限基準을 정한다.

② 農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使用基準과 取扱制限基準에 따라 使用하거나 取扱하여야 한다.

第19條 (農藥의 檢査 등) ① 農水産部長官·道知事 또는 植物檢疫所長은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製造業者·輸入業者·原劑業者·販賣業者 또는 防除業者가 製造·輸入·販賣 또는 使用하는 農藥이나 그 原料 또는 關係帳簿나 施設을 檢査하게 할 수 있으며 農藥이나

그 原料의 檢査를 위하여 필요한 試料을 收去하게 할 수 있다.

②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는 그 製造 또는 輸入한 農藥에 대하여 出荷前에 自體檢査를 實施하고 自體檢査畢證書를 添附하며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事項을 記載한 自體檢査成績書를 國立農藥資材檢査所長(이하 “資材檢査所長”이라 한다)에게 提出한 후 出荷하여야 한다.

③ 資材檢査所長은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가 出荷前에 그 農藥에 대한 檢査依頼를 한 때에는 이를 檢査(이하 “申請檢査”라 한다)하여야 한다.

④ 資材檢査所長은 農藥의 品質管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職權으로 그 農藥에 대한 檢査를 할 수 있다.

⑤ 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行하는 公務員은 依法 또는 依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된 農藥에 대하여 그 危害防止를 위한 安全措置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이를 封印하여 收去 또는 廢棄할 것을 命할 수 있다.

⑥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基準은 農水産部令으로 정한다.

⑦ 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行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關係人

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第20條 (農藥管理에 관한 報告등)

① 農水産部長官·道知事 또는 植物檢疫所長은 製造業者·輸入業者 原劑業者·販賣業者 또는 防除業者에 대하여 農藥管理에 관한 事項을 報告하게 하거나 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하게 된 施設에 대하여는 그 補完을 命할 수 있다.

② 製造業者·輸入業者·原劑業者 또는 販賣業者는 農藥이나 原劑를 製造·輸入·購入(無償讓受를 포함한다) 또는 販賣(無償讓渡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事項을 農藥管理臺帳 등 帳簿에 記載하여 이를 2年間 保存하여야 한다.

第21條 (手數料) ① 第7條 第1項 第9條 第1項·第10條 第1項 및 第11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登錄을 申請하는 者는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② 第19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請檢査를 依頼하는 者는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檢査料를 資材檢査所長에게 納付하여야 한다.

第22條 (農藥管理基金) ①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는 第6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試驗에 所要되는 費用을 造成하기 위하여 農藥管理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하여야 한다.

② 基金은 製造業者 및 輸入業者로 構成된 團體로서 農水産部令으로 指定하는 團體(이하 “基金管理者”라 한다)가 이를 管理·運用한다.

③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積立金

2. 基金의 運用에서 생기는 收益金

④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가 告示品目を 製造 또는 輸入하여 販賣하는 때에는 每年 그 販賣額의 100分の 2를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率의 金額을 基金에 積立하여야 한다. 다만,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의 申請에 따라 試驗을 實施한 告示品目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基金에의 積立義務의 全部 또는 一部를 免除할 수 있다.

⑤ 基金은 다음 各號의 用途에 이를 使用한다.

1. 農藥의 品目告示를 위한 試驗費用

2. 農藥의 安全使用·取扱 및 管理에 관한 試驗과 教育·弘報費用

3. 基金의 管理費用

⑥ 基金管理者는 每年 基金運用計劃을 樹立하여 農水産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⑦ 基金의 運用 및 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⑧ 農水産部長官은 基金管理者에게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項을 報告하게 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調査하게 할 수 있다.

第23條 (適用排除) ① 製造業者 또는 原劑業者가 輸出目的으로 農藥이나 原劑를 製造하고 이를 輸出하는 경우에는 그 農藥이나 原劑에 대하여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 한다. 다만, 부득이 한 事由로 輸出하지 못한 農藥이나 原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法에 의한 農藥에 대하여는 毒物 및 劇物에 관한 法律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③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는 農藥의 生物學的 試驗을 위하여 필요한 農地를 農地改革法의 規定에 不拘하고 3헥타의 範圍안에서 取得할 수 있다.

第24條 (權限의 委任) ① 農水産部長官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이 法에 의한 權限의 一部를 農村振興廳長·資材檢査所長·植物檢疫所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任을 받은 道知事は 農水産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그 委任받은 權限의 一部를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서울特別市 및 釜山市에 限한다)에게 再委任할 수 있다.

第25條 (罰則) 다음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1,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5條 第2項 本文의 規定에 違反하여 告示되지 아니한 品目을 製造 또는 輸入하거나 販賣한 者
2. 第7條 第1項 · 第8條 第1項 · 第9條 第1項 · 第10條 第1項 및 第11條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農藥이나 原劑의 製造 · 輸入 · 販賣 또는 防除를 業으로 한 者
3.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農藥의 表示를 하지 하거나 虛爲의 表示를 한 者
4. 第16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農藥을 陳列 또는 販賣한 者

第26條 (罰則)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7條 第3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營業을 讓渡 또는 賃貸하거나 施設을 變更한 者
2. 第17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虛僞廣告 또는 誇大廣告를 한 者
3. 第1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나 試料의 收去를 拒否 · 妨害 또는 忌避한 者
4. 第19條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農藥을 出荷한 製造業者 · 輸

入業者와 虛僞의 自體檢査成績書를 作成한 檢査責任者

5. 第19條 第5項의 規定에 의한 農藥의 收去 또는 廢棄의 命令에 違反한 者

第27條 (罰則) 製造業者 · 輸入業者 또는 販賣業者가 第18條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農藥을 取扱한 때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8條 (罰則) 다음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7條 第4項 · 第8條 第2項 · 및 第3項 · 第9條 第2項 및 第3項 · 第10條 第2項 및 第11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爲의 申告를 한 者
2. 第18條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農藥을 使用한 防除業者
3. 第2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報告를 虛僞로 한 者
4. 第20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農藥管理臺帳 등 帳簿에 虛僞事項을 記載한 者

第29條 (罰則) 防除業者 이외의 農藥使用者가 第18條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農藥을 使用한 때에는 1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30條 (罰則) ① 이 法에 違反하여 農藥을 製造 · 輸入 · 販賣 또는 使用하여 사람에게 危害를 發生시

킨 때에는 3년이하의懲役に處한다.

② 第1項의行爲에 의하여 사람을死傷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이하의懲役に處한다.

第31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其他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25條 내지 第28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各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32條 (沒收)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處罰을 받은 者가 所有·所持하는 農藥(同條 第2號중 第10條第1項 및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處罰을 받은 者가 所有·所持하는 農藥중 이 法에 違反되지 아니하는 農藥은 除外한다) 과 그 情을 알고 第三者가 取得한 農藥은 그 全部를 沒收한다. 다만 그 農藥을 沒收할 수 없을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第33條 (施行令)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附 則

①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0日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5條 第6項의 規定은

이 法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② (罰則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의한다.

③ (製造業의 許可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業 또는 輸入業의 許可를 받았거나 原劑 및 販賣業의 登錄을 한 者 또는 防除業의 申告를 한 者는 이 法에 의한 製造業 또는 輸入業의 許可를 받았거나 原劑業·販賣業 또는 防除業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日로부터 1年이내에 이 法의 基準에 適合한 要件 및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④ (品目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附則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가 從前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品目으로서 이 法에 의하여 告示되는 品目は 이 法에 의하여 登錄한 品目으로 본다.

⑤ (檢査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받은 農藥은 이 法 第1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